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2019. 6. 26.

금 융 위 원 회

1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농협손해보험]**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농협손해보험	서보득 차장 (02-3786-7687)	하주식 과장	02-2100-2960	홍영호 팀장	02-3145-7471
		현지은 사무관	02-2100-2962	변효길 선임	02-3145-7473

□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 동 쿠폰을 농협손해보험(주)의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제공

□ (규제특례 신청내용) 보험업법 제2조제12호, 감독규정 제4-33조

-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특례 신청
-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 받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보험상품당 모바일 선불쿠폰 금액 합계(최대 2만원) 및 할인율(최대 10%) 한정
- 모바일 선불쿠폰 제작·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쿠폰의 사용조건 및 환불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기대효과) 모바일 First를 넘어 ‘모바일 Only’ 시대에 ‘모바일 가입 e-쿠폰’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금융분야와 접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는 생활밀착형 소비공간을 활용하여 위험보장 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 기대

□ (향후일정) 연내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보험 모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아이콘루프	임영광 팀장 (010-9100-9361)	전요섭 과장	02-2100-2950	박상규 팀장	02-3145-7502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손성기 선임	02-3145-7504

- (서비스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 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 후 my-ID생성 → 타기관에서 인증요청시 생체인증 등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

- (규제특례 신청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
-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에 my-ID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두가지(①, ④)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제특례 요청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 서비스 이용범위 제한(연간 최대 5천명)

- (기대효과)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

* 기존 7단계(약관동의→휴대폰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에서 4단계(약관→my-ID→투자성향→비밀번호등록)으로 축소

- my-ID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내역을 통합관리 가능

- (향후일정) 6개월 간 개발 후 '19.12월에 서비스 출시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서비스 운영 결과 및 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파운트	김나예 매니저 (010-3266-8454)	전요섭 과장	02-2100-2950	박상규 팀장	02-3145-7502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손성기 선임	02-3145-7504

- (서비스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 (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으로 실명확인 후 정보지갑 생성

- (규제특례 신청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
-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에 정보지갑을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가지(⑤)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제특례 요청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 서비스 이용범위 제한(연간 최대 5천명)

- (기대효과)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

* 정보입력 절차를 대폭 생략 → 20개 프로세스 중 7개가 감소

- 분산ID플랫폼을 통한 인증허용으로 더 편리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향후일정) 4개월 간 개발 후 '19.10월에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서비스 운영 결과 및 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소비자과		금감원 감독총괄국	
머니랩스	차인환 매니저 (010-8603-4715)	김기한 과장	02-2100-2630	이준호 국장	02-3145-8300
		류성재 사무관	02-2100-2632	고윤광 선임	02-3145-8008

- (서비스 주요내용)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주는 비대면 서비스
 - 또한, 대출 전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 제공
- (규제특례 신청내용)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9조 제2항
 -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신청
 -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주의)해야 함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
- (기대효과) 대출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수요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등 편의성 제고
 - 소비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

신청기업명	기업 담당자	금융위 소비자과		금감원 감독총괄국	
레이니스트	최재웅 이사 (010-8725-9241)	김기한 과장	02-2100-2630	이준호 국장	02-3145-8300
		류성재 사무관	02-2100-2632	고윤광 선임	02-3145-8008

- **(서비스 주요내용)** 다양한 금융회사의 확정적인 대출조건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또한, 대출신청정보 외에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하여 우대금리 적용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출 지원
- **(규제특례 신청내용)**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9조 제2항
 -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신청
 -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주의)해야 함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
- **(기대효과)** 대출수요자는 대출조건 확인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 아울러, 금융회사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거쳐 금년 10월경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